

삼성화재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TDF 2030 신탁계약서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삼성화재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TDF 2030”이라 한다.
-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신탁재산을 글로벌 주식 또는 글로벌 채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글로벌 주식 및 글로벌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식 및 글로벌 채권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위탁자의 업무를 영위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2. “투자일임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탁업자”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탁자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국민은행을 말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법 제18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하나펀드서비스를 말한다.
5. “투자신탁재산”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으로서 그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말한다.
6.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에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7. “수익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특별계정에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및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배분 받는 보험계약자 등을 말한다.
8. “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에 설정(추가 설정 포함) 또는 인출되는 재산가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9.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아래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시장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산정
- ② 환매청구신청 당일

10.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손익의 귀속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투자신탁재산 운용의 일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 등에 일임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을 제1항의 방법으로 일임한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신탁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위탁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위임된 업무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6조(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금(상환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계법규 및 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기준가격의 산정,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투자신탁재산 운용성과분석 보고서 등의 작성·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법 또는 이 계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투자신탁의 설정)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는 최초의 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②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제11조에 의한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납입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투자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0조(투자신탁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년도 매 12개월 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년도중 처음 도래하는 회계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납입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2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3.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4.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5. 환매조건부 매도
6. 증권의 차입
7.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의 60 이상으로 하며 아래 i, ii를 준수한다.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80이하로 한다. 다만, 2030년 1월 1일 이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i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95이하로 한다. 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채권 관련 자산 중 하이일드 채권 및 하이일드 채권 관련 자산의 비중은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함과 동시에,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채권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3.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4.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14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

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4.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

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16조(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 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 보수율 : 연 1000분의 7.0 이하
-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17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4.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5. 투자증권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 비용
7.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보,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8. 투자신탁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18조 (투자신탁의 폐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신탁을 폐지할 수 있다.

1. 당해 각 투자신탁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제19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폐지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의 뜻과 해지사유, 해지일자, 해지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사항을 사전에 신탁업자에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 지급시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이 완료된 후에 집합투자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의 현금화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어려운 경우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 자체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자의 이익과 상충할 우려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탁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 등의 방법으로 해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의 매매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및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재산보관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신탁업자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가 영업의 일부·전부를 양도하거나 정상적인 수탁업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신탁업자와 변경에 합의한 경우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신탁계약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6.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따라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25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 6 . .

집합투자업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회 사 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최 영 무 (인)

신탁업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 민 은 행
대표이사 : 허 인 (인)